

□ 인지세 안내

- ▶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**부동산의 소유권 이전(분양 및 전매포함) 계약시 인지세를 납부**하여야 합니다.
(※ 인지세는 재산권에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첨부되는 수입인지의 가격이며, 수입인지는 수수료나 세금을 냈다는 증빙으로 사용됩니다.)
- ▶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**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◆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▶ 수입인지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◆ 가산세 (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)

- ▶ 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▶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▶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- ※ 본세는 별도이며 순수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.

◆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▶ 과세대상 :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▶ 납부기한 및 방법 :
 -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/(전매)명의변경 승인일
 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□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

해당
홈페이지 접속

전자수입인지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

종이문서용
전자수입인지
선택



③

비회원서비스
또는
회원 로그인 후
구매

④

구매
▽
납부정보이력

1. 용도 : **인지세 납부** 2. 과세문서종류 : **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**
3. 금액 : **150,000원** 4. 건수 : **1건** 5. **확인 및 결제**



⑤

구매
▽
납부정보이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(재발행 불가)**

